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3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구 차원의 비전과 도시발전구상 부재 등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의 및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화 시대에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을 강화 및 확립하고, 57만 인구 자치구의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는 자율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자고 함

3. 주요내용

가. 강서구도시기본계획,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나.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내용, 타 계획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 제6조)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을 추가함
(안 제8조)

라. 위원회 회의 결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시 조례에 따라 개정함
(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관련 사항

1) 입법예고(2022. 9. 28. ~ 10. 18.) 결과 : 의견 없음

2) 사전검토 완료

-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일부 반영

· 분과위원회 성별균형 참여 명시(반영)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성별균형 미고려(미반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5조로 하며,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3조를 제7조로 하며,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주거, 교통, 환경 등 분야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기본계획을 말한다.
2.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이란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3. “구계획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4 제2호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4. “구계획시설사업”이란 구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구”를 “강서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도시계획위원회”를 “강서구도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3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장제2절제22조를 제3장제2절제26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4조) 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방향) ①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는 강서구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구청장 임기와 연동하여 4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 반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교통·환경·공원·녹지·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구계획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 사항
6. 그 밖에 강서구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타계획과의 관계) 구청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등 그 밖의 도시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 앞에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조 앞에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을 삽입한다.

제7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구에”를 “강서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을 “도시계획 관련”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두되”를 “되고”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회의록 관련 사항은 시 조례 제61조를 따른다.

제19조(중전의 제15조) 중 “구 공무원”을 “강서구 공무원 및 구의원”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삽입한다.

제23조(중전의 제19조)제2항 중 “구소속”을 “강서구 소속”으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이란 <u>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주거, 교통, 환경 등 분야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기본계획을 말한다.</u> 2.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이란 <u>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u> 3. “구계획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4 제2호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4. “구계획시설사업”이란 <u>구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u>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신 설>

제3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강서구”-----

-----.

제2장 강서구도시기본계획

제4조(기본방향) ①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는 강서구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②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신 설>

<신 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구청장 임기와 연동하여 4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교통·환경·공원

· 녹지·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구계획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 지원 사항

6. 그 밖에 강서구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타계획과의 관계) 구청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원도심 활성화종합계획 등 그 밖의 도시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신 설>

<신 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

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생략)
4.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6. (생략)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

<삭 제>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

----- 강서구에 -----

-----.

② -----

1. (현행과 같음)
2. -----

----- 구청장 -----

3. (현행과 같음)
4. --- 도시계획 관련 -----

5. 6.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

로 구성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 그 위원의 수를 30명까지로 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 · 제10조 (생략)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 . -----

-----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

----- 되고-

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제13조 (생략)

제14조(회의결과의 관리) ①·② (생략)

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회·시의회·구의회·감사원·법원·검찰·경찰 등의 기관장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3조2 및 영 제113조의3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제17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8조(회의결과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록 관련 사항은 시 조례 제61조를 따른다.

<삭제>

<삭제>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 강서구 공무원 및 구의원-----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생 략)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 설>

제18조 (생 략)

제19조(기획단의 구성) ① (생 략)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 ~ 제22조 (생 략)

제3장 보 칙

<신 설>

제23조 (생 략)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삭 제>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22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3조(기획단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강서구 소속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 ~ 제26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보 칙

제27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안 제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예상 소요 비용: 8,400천원
 - 참석수당(매년): 약 8,400천원(22명*70,000원*5회+70,000원*5명*2회)

4. 작성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과장 홍재정

(담당: 시설 7급 박지용 / ☎ 2600-638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3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도시계획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 맞춤형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의 및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화 시대에 우리 구의 도시계획고권을 강화 및 확립하고,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는 자율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자고 함

□ 주요내용

- 가. 강서구도시기본계획,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내용, 타 계획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 제5조)
-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을 추가함(안 제7조)
- 라. 위원회 회의 결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시 조례에 따라 개정함(안 제17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의 및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기틀을 마

련하고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자율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5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박지용	전화번호 02-2600-638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의 및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 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의사결정을 위한 단위를 구성할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참고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	제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	종합검토의견 참고

	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⑤(생략)	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③~⑤(생략)	
2	제19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연 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9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연 구위원을 포함 한 5명 이 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1월 3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도시계획과장 귀하			